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2010. 10. 21

관 세 청

목차

I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개요
2.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1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 2 인증수출자 제도 연혁 ····· 3
п	인증업무 흐름도
ç	민증업무 흐름도 ········· 4
Ш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3. 4. 5. 6.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IV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3. 4. 5.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참고	
2. 3.	인증수출자제도 주요 개정 내용 20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시험 시행기관 요건 21 인증수출자 관련 규정 22 주요 서식 및 작성 방법 27

I.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개요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개요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3년
인증기관	관세청(인증심사센터)	본부세관, 평택・울산・안산・진주세관
인증기준	법규준수도 및 증명능력 복잡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 관련 규정

-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
- o 하-EU 협정문
 - 원산지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 2(품목별 인증수출자), 제8조의2(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 FTA특례고시 제2-4-7조(인증신청 특례)~제2-4-11조(인증취소 및 청문)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2

협 정	인증 前	인증 後
	o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o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ㅇ 첨부서류 제출 생략
_	ㅇ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ㅇ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전자문서 이용가능
한·EU	미발효	-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EFTA FTA와 같은 방법으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 하는 원산지신고서의 형태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연혁

□ 제도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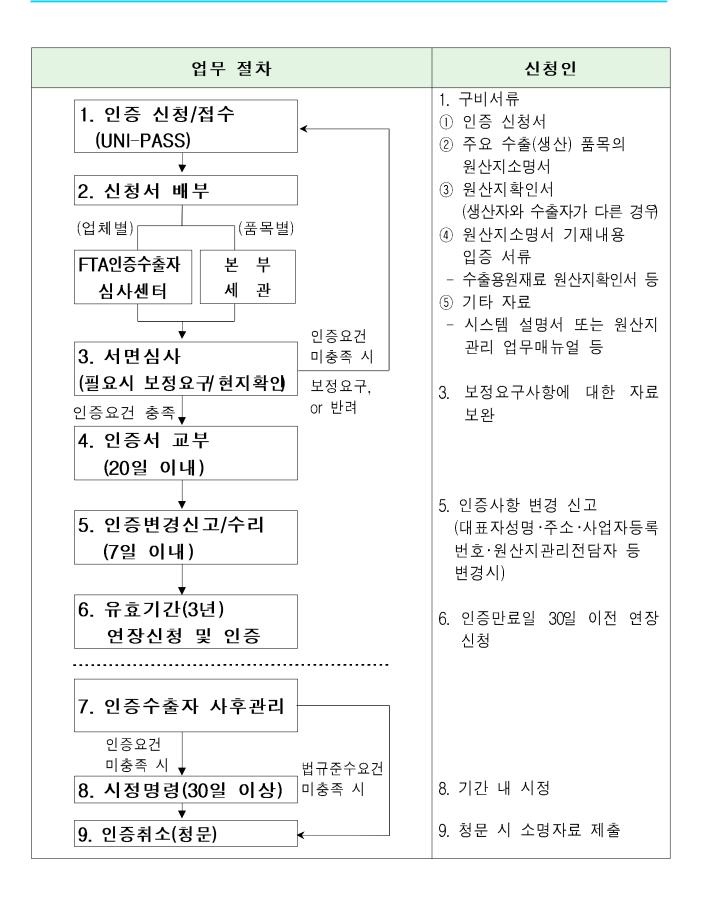
3

- ('07.6.1) 한-아세안 FTA 발효시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를 만들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자(생산자)에 대하여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시행
- ('08.7.15)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 운영
 - ('10.4.1) 기존의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 이용이 적고, 향후 발효예정인 한·EU FTA에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수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이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각 제도별 비교

구분	생산공장보유업체 제도	종전 인증수출자제도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
丁正	('07. 6.1 시행)	('08. 7. 15 개정)	('10. 4. 1 개정시행)
요건	- 생산시설 소유 및 임대자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 최근 2년간 수출 50건 이상 연평균 100만불 이상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미위반자 - 전년도 C/O발급실적 20건 이상, 발급오류 비율 5%이하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 C/O 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미위반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 에 의한 C/O 미 발급자 - 최근 2년간 5회이상 C/O 미 반려자	- 원산지 증명능력 보유 (전산시스템 보유) - C/O 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미위반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 에 의한 C/O 미 발급자 - 최근 2년간 5회이상 C/O 미 반려자
인증 물품	- HS 6단위(모델·규격별)	- 모델·규격별	- (업체별) 모든 물품 - (품목별) HS 6단위
현장 확인	- 공장을 방문하여 수출품 생산여부 확인	- 필요시 현장확인	- 필요시 현장확인

Ⅱ. 인증 업무 흐름도



Ⅲ.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1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1)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①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 외부의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 제9항)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4)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법 제13조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③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⑤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 (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자

1) (Process)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 원산지확인서 또는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확보	
① 원재료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시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② 원산지 기준 관리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생산자로부터 원산 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주요 수출 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①프로세스적정여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시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②서류작성적정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시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주요 내용	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④ 원산지 증빙 자료 관리 (검증 대비)	O 시행령 제 13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2)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주요 내용		확인방법		
		2시 제2-4-7조제2항에 따른 (역증(원산지관리사)을 갖춘 경		해당 자격증
	- 인증신청일 (기관발급0 - 원산지 교 : 시간당 2 * 민간협회의	없는 경우, 다음 항목의 총합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 네 한함): 건당 1점(최대 20 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2점(최대 20점) FTA 업무관련성,과목의 적정 참고, 인증심사 담당자가 인	명서 발급실적점) 점) 사내교육 등	
	인정 과목		점수	
① (내부)원산지관리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10점)	교육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전담자 지정 -	정 물 등기분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10점)	
	원산지 관리실무	·증명서 발급·작성 실무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소지자 : 5 - 관세청 또· 건당 5점(최 * 관세사, 회 - FTA관련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점(관세업무 담당 변호사·관세사는 전문기관 [*] 으로부터 FTA 취 하대 20점) 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업무 전담 경력 점, 2년이내 3점, 3년이내 4점	:40점) 컨설팅 실적:	
② (외부)전문가지정 (별도심사 생략)		관세사·변호사(특례법 제13 가 지정시, 인증후 관리여부		원산지관리계 약서 등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시성 여우(기관말급 포함) │ * FTA특례고시 벽지 제3호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C/O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 견서

4) (법규준수) 처벌이력 등 확인

	주요내용	확인 방법
1	최근 2년간 법 제 13조제 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 확인	본부세관 심사총괄과 공문 확인 등
2	최근 5년간 영 제 13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3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5)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없는 자	본청, 관할세관 및 C/O 발급기관에 공문 확인 등

5) (현지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

구분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에 따른 원산지 판정 시현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확보 및 관리 실태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 - 주기, 대상, 강사, 교육 컨텐츠 등	
②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o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o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제공 실태	견본 확인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2

-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2.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5개 품목 이내)
- 3.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단,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
 - *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FTA특례법 제 20조 참조)
- 4.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 회사개요, 생산시설 현황, 주요 생산(수출)품목, 수출국 등 소개자료
 -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 5.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전산시스템 보유 시) 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 *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매뉴얼
 - (전산시스템 미보유 시)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연번	품명	규격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	000	12*45	3504.00	한-아세 안	CTH or RVC40%	충 족
2	000	12*45	3504.00	한-EFTA	CTH or MC50%	충 족
20	000	45*90	3503.00	한-아세 안	CTH or RVC40%	불충족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6.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별지 제30호 서식)
 -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
 - *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 ◆ 관세청 인증수출자 상담팀 연락처
 - ㅇ 전화번호 : 031-600-0760, 031-600-0764, 또는 031-697-2553
 - ㅇ 이메일 : fta@customs.go.kr

3 기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FTA특례고시 제2-4-8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 *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보정요구서 양식: 별지 제 29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서면통보)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
-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 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 발급기관에 통보

4 유효기간 연장

-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3년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3호에 따라 신청
-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5

-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포괄적 인증에 따른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체결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원산지 발급 내역 등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나.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확인 대상 및 시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
 - ※ 인증수출자 위험관리 및 현지확인 기준·절차는 별도 하달 예정
 -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된 외부원산지전문가가 당해 업체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다. (확인방법) FTA특례 고시 제4장 제2절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가. 시정명령의 의의

6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나. 시정명령 요건(규칙 제7조제9항)

-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 다.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라. 인증 취소(규칙 제7조제9항·제10항)
 - (요건)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할 경우
 - (절차)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예정 10일 전까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Ⅳ.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4)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법 제13조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1)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신청서에 기재된	○ 생산공정 확인	원산지소명서,
HS 6단위 물품의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원산지확인서,
대표품목(장)에내 불	있는지 여부,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 출 용 원 재 료
선정하여 원산지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생산자로부터 원산	원산지확인서,
결정기준 충족	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회사소개자료,
여부 확인(사전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전검증결과보
검증시 확인한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고서 및 의견서
협정 · HS&단위	- 주요 수출(생산)품목 5개 이내 선정	제 품생 산공정
생략가능)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설명서 등

- 원산지확인서 및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가 정	
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2)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주요 내용		확인방법		
	1	고시 제2-4-7조제 <i>2</i> 항에 따른 사격증(원산지관리사)을 갖춘 2		해당 자격증
① (내부)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O 자격증이 (- 원산지관리 * 업체 원산지 - 인증신청일 (기관보급이 - 원산지 시화의 등 인장 하나 기준 등 의 - 관시청 무역, 격증 소지는 - 관세청 또는	없는 경우 다음 점수 총합이 담당자용 업무매뉴얼 : 10년 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에 한함) : 건당 1점(최대 10 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당 2점(최대 20점) FTA 업무관련성, 과목의 적건 참고, 인증심사 담당자가 인 인정 내용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인증수출자 제도	20점 이상 점 적으로 기술 형서 발급실적 점) 사내교육 정성, 강사 전 정여부 판단 점수 시간당 2점 (최대 10점) 시간당 2점 (최대 6점) 시간당 2점 (최대 10점) 시간당 2점 (최대 10점) 시간당 2점 (최대 10점) 시간당 2점 (최대 10점)	교육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FTA관련 (1년이내 2년			
② (외부)전문가지정		관세사·변호사(특례법 제13 가 지정시, 인증후 관리여부		원산지관리계 약서 등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지정 여부(기관발급 포함) * FTA특례고시 별지 제3호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C/O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 견서

4) (법규준수) 처벌이력 등 확인

주요내용	확인 방법
① 최근 2년간 법 제 13조제 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 확인	본부세관 심사총괄과 공문 확인 등
② 최근 5년간 영 제 13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 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5) (현지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

구분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ㅇ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① 수출(생산)기업	o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확보 및 관리 실태	
방문 시	ㅇ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	
	- 주기, 대상, 강사, 교육 컨텐츠 등	
② 원재료공급업체	ㅇ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거ㅂ하이
방문 시	o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제공 실태	견본 확인

입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
- 2.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5개 품목 이내)
- 3.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단,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을 허용
 - *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FTA특례법 제 20조 참조)
- 4.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 회사개요, 시설 현황, 주요 생산(수출) 수출품목, 수출국 등 소개자료
 - 제품생산공정 설명서
- 5.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연번	품명	규격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	000	12*45	3504.00	한-아세 안	CTH or RVC40%	충 족
2	000	12*45	3504.00	한-EFTA	CTH or MC50%	충 족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6.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별지 제 30호 서식)
 -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
 - *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 ◆ 관세청 인증수출자 상담팀 연락처
 - ㅇ 전화번호 : 031-600-0760, 031-600-0764, 또는 031-697-2553
 - ㅇ 이메일 : fta@customs.go.kr

3 기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FTA특례고시 제2-4-8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 *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보정요구서 양식: 별지 제 29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서면통보)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
-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 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워산지 발급기관에 통보

4 유효기간 연장

-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3년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3호에 따라 신청
-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

│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5

-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포괄적 인증에 따른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체결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원산지 발급 내역 등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나.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확인 대상 및 확인 시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
 - ※ 인증수출자 위험관리 및 현지확인 기준·절차는 별도 하달 예정
 -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된 외부원산지전문가가 당해 업체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다. (확인방법) FTA특례고시 제4장 제2정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가. 시정명령의 의의

6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나. 시정명령 요건(시행규칙 제7조의2 제5항)

○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다.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라. 인증 취소(시행규칙 제7조의2 제4항·제5항)

- (요건)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할 경우
- (절차)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예정 10일 전까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참고 1 인증수출자제도 주요 개정 내용('10.4.1.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_	기 존	개	정		
구 분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 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좌동)	·해당품목(HS6단위)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좌동)		
인 증 요 건	·원산지관리담당자 지정 및 운영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외부인 가능)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외부인 가능)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 보관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 처벌 無	(좌동)	_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좌동)	_		
	·최근 2년간 5회이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無	(좌동)	_		
- 혜 택 범	협정,품목,모델,규격별로 각각 인증을 받아야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위		(모든 협정에 적용)	(인증 협정에만 적용)		

-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신청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증요건이 다르고 혜택이 상이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선택
 -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로 수출이 예상될 경우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
 - 적은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지역, 인도)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로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

참고 2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시험 시행기관 요건 (별표 8호, 별지 제27~28호)

가. 시험 기관 :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나. 합격 기준

- ㅇ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
-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다. 기본교육 과목 및 이수시간

- FTA 협정 및 법령 (4시간 이상)
- ㅇ 품목분류 실무 (4시간 이상)
- ㅇ 수출입 통관실무 (4시간 이상)
- 원산지 결정기준 (4시간 이상)

라. 시험과목

- FTA 협정 및 법령 (25문항)
- 품목분류 실무 (25문항)
- 수출입 통관실무 (25문항)
- 원산지 결정기준 (25문항)

마. 출제위원

- 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FTA, 국제통상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관세행정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참고 3 인증수출자 관련 규정

1. 관련 규정

가. FTA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⑥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나. FTA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세 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0.3.2>
- 1. 수출신고의 수리 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제 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3.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 4.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 5.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제 6조의 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관리 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 ·운영하는 자
-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3.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5.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 1항제 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 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제 6조의 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 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
-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 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 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 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
-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 1항제 1호 및 제 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 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 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 · 제2 호의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

- ①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2>
- ③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0.3.2>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관리 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 ·운영하는 자
- 3.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4.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
-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제 6조의 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한다.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 1항제 1호 •제 3호 및 제 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이,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 1항제 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통보하여야 한다.
-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본다.

제8조의2(협정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절차)

- ①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서명에 관하여 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협정에 따라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참고 4 주요 서식 및 작성 방법

<시행규칙>

- 1. 별지 제1호 서식 : 원산지소명서
- 2. 별지 제2호 서식 :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
- 3. 별지 제3호 서식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4. 별지 제4호 서식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5. 별지 제4호의2 서식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6. 별지 제4호의3 서식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FTA특례고시>

- 1. 별표 8 서식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 2. 별지 제4호 서식 : 원산지 확인서
- 3. 별지 제27호 서식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 4. 별지 제28호 서식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 5. 별지 제29호 서식 : 보완요구서
- 6. 별지 제30호 서식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확약서

<사전검증 시행세칙>

1. 별지 제8호 서식 : 원산지 사전검증 결과보고서

<관세청 지침>

- 1. 사전검증 대상기업의 원산지 인증심사특례 적용을 위한 의견서
- 2.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서

<u>[별지</u>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7.15>									(국문 앞쫙	
원 산 지 소 명 서												
		상	호					사업지	·등록번호			
1.수출	<u>-</u>		 자(성명)					전화				
			(전자주소)									
0 211 2	11	상	<u>호</u>						ト등록번호			
2.생신	<u></u>		<u>자(성명)</u> (전자주소)					선와	/ 팩스			
		450	(전시구끄)		튵	<u> </u>	명	세				
3.품명	!/규족	1						4.HS N	lo.			
5.물품	가격	_	가격조건 금 액	FOB (),	Ex-Works	()	6.원산지] 결정기준			
7.주요	생산											
					q	원 재 료 미	병 세	서				
8.연번		9.재.	र छ	10.HS N	Jo.	11.원산지		12.7	<u>구</u>	13	3.공급자	
0. 년인		J•∧∏.	TT. 0	10.H5 No.	11.편안시	ว์	- 량	가 격		(생산자)		
				0) 2) =1	-n	(7.1)						
	14.	항	셈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11.	н /	11	합 계								
					원신	· 지인정.	요건	검토				
15.완경	전생신	·기준 중	충족여부	예 🗌	o} 1	니오 🗌	16.2	네번변경7	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부기	トフトネ]기준 출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 —	부가가 덕용품목	예 🗌	o }-1	니오 🗌	19.2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0.누	적기준	는 적용 여	겨부	예 🗌	아	니오 🗌	21.9	벽외가공7	기준 적용여부	· 예 🗌	아니오 🗌	
22.직접운송 여부				예 🗌	아-1	니오 🗌	23.7	기 타		예 🗌	아니오 🗌	
24.원석	산지	결정			きる	족 ()		불충족	· ()	
(시행·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직	성 자 의	: :			(서명)	1			
l			~~	Ħ	•							

210mm×297mm(신문용지 54g/ m(재활용품)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국문 뒤쪽

	(국문 뒤쪽 작 성 요 령								
번호	기재항목	기계내용							
1	수 출 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생 산 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 (전자주소 포함)등을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HS. No.	ㅇ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물품가격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 표기합니다.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 쓸 ,부가가치기 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 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 에는 "조합기준"으로 적습니다.							
7	주요생산공정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면직물에 국내 〇〇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8	연 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재 료 명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10	HS No.	o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원 산 지	o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							
12	가 격	o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13	공급자 (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14	합 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 위 가액과 그 합 계액을 적습니다.							
15 ~23	원산지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표기합니다. ○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원산지결정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O"를 표기합니다.							

(영문 앞쪽

									(8	그 교기
				Origin Ve	rificatio	on Qu	estion	naire		
		Name	of Company	v	Business Number					
1.Exporter Representative			,	Telephone & Fax No.						
		Addr	ess							
		Name	of Company	у			Busines	ss Number		
2.Prod	lucer	Repr	esentative				Telepho	one & Fax No.		
		Addr	ess							
				Descript	ion of I	Expoi	ted G	oods		
3.Nam	e & M	lode l					4.HS No	ο.		
5.Val	ue		Term of Price	ice FOB ()	, Ex-Works	()	6.0rig	in Criteria		
7.Desc Product							<u>I</u>			
rroddot	101111	00000	l							
				List	f Mater	ials	s(Part	s)		
8.S/N	Q	Mata	rial Name	10.HS No.	11.0rigin		12.	Price	13.Sup	nlier
0.3/N	9	. Mate	I I a I Name	10.113 NO.	TT.OTIGIT	Volume		Cost	13.50	ритег
				Originating	 Materials					
	14. 1	otal	Cost	Non-Originati					_	
				Tot						
				0r	igin Dete	rmina	ation			
			d Criterion	Yes	No 🗌	16.7	Tariff Shi	ft Criterion	Yes	No 🗌
17.Va	lue-a	dded	Criterion	Yes	No 🗌	(Rati	o :	%)		
18.Co	mbine	ed Cri	terion	Yes	No \square	19.De Minimis		Yes	No 🗌	
20.Ac	cumu l	ation)	Yes	No 🗌	21.Outward Processing		Processing	Yes	No 🗌
22.Di	rect	Consi	gnment	Yes	No 🗌	23.0	Other Red	quirements	Yes	No 🗌
24.0r	igin	Deter	mination	Qualific	ed ()		Non-Qualif	ied ()
and I upon r	assun eque:	ne the st, a	e responsib	ility of prov and documer	ing such re	epreser	ntations	questionnaire . I agree to r port the rep	maintain, a	nd present
			Name	· :		(Signature)				
			Titl	e :						
			Comp	any & Address	3:					
			Date	e :						
√ Docu	menta	ry Evi	dence>							
1. Inv)			2. List	of Mater	ials ()		
3. Pay	ment l	Eviden	ice for Mater	ial ()		4. A Cop	by of Impor	t Permit for Non-or	iginating Mate	rials ()
5. Pro	ducti	on Pro	cess Documen	nts ()		6. Dire	ct Transp	ortation Eviden	ce ()	
7. 0th	er Re	lated	Documents, i	f Required ()					

	Instructions	(अंट नेच्	ν	
Field	motructions	for Completing the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Field				
1	Exporter	 Name of the Company, business No., name of representative telephone and fax No., and address of the Company including the email address of the actual exporter of the concerned item. 	ne	
2	Producer	 Name of the Company, business No., name of representative telephone and fax number, and address of the Company of the actual producer/ processor/ manufacturer in the exporting country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nė	
3	Nama/Madal	Specifications including item name, model name, brand name, an size	nd	
3	Name/Model	 eg. Cell phone; Samsung MX-2700; Anycall The name of the exporting item should be the same as the name in the invoice. 	ne	
4	HS No.	Six-digit HS cod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5	Value	 Terms of price: mark 'O' in FOB, if it is 'free on board', mark 'O' in Ex-Works, if it is 'ex-works' or 'ex-factory' 		
		 Price: Write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concerned exporitem. Currency should be the same as that in the invoice. 	11	
		 Write the criterion applied to determine the origin of th concerned export item pursuant to the Law and the Enforcemer Regulations. 	nt	
6	Origin Criteria	Origin Criteria	eg. Writ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when Change in Tar Classification Criterion is applied; 'Value Added Criterion' when Valu Added Criterion is applied; 'Combined criterion' when combine criterion is applied, upon which both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 Criterion and Value Added Criterion should be fulfilled.	ie ed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Describe the each step in the process in a sequential order.		
8	Serial No.	 Serial numbers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 concerned export item. 	ie	
9	Material Names	 Names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concerne export item. 	d	
10	HS No.	Six-digit HS codes of the materials.		
11	Origin	Producing country of the materials.		
12	Price	 Volume and cost of the raw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 concerned export item. 		
13	Supplier	 Name of Company, address((including the e-mail address), Telephon & Fax No. 	ne	
14	Total Cost	 The sum of the cost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and the sum of th cost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as well as the total cost of th raw materials. 		
15~23	Origin Criteria	 Check whether the concerned export item is qualified for th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eg. mark 'Yes√', if qualified: mark 'No√', if not qualified If section 19, 20 & 21 are marked 'Yes', further documentar evidence should be attached as annexes 		
24	Origin Determination	Mark 'O' in Qualified if the origin determination can be made with th Cost & Production Statement; mark 'O' in Non-Qualified if not.	ne	
Docum	entary Evidence	Mark 'O' if the documentary evidence is attached to the Cost of Production Statement other related documents can be noted in the Other Documents section		

	3	수 출	है है	원	! 재 료	. 원 4	ト ス] (포	괄)	확 인 서
										발급번호 :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1.공급	감자	대표자	(성명)					전 화	/ 팩스	
		주소(전	자주쇼							
2.공급	-	상	ই					사업자	등록번호	
(수출	:자	대표자	(성명)					전화	/ 팩스	
/생각	산자) [주소(전	자주쇼				•		'	
					공 급	물 품	명	세기	4	
3.연번	4 平 日	병 • 규격	5.적용	대상	6.품목번호	7.원산지	8.원신 충족	·지기준 ·여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O. 근인	±-12.4	o' 11/7i	협정		(HS 6단위) 결정기준		충족	미충족	가한단시	(년 월 일~ 년월 얲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작성 ·제공합니다.										
				직 상 :	성 자 위 호 및 주 소 성 일 자	:			(서명)	

210㎜×297㎜(신문용지 54g/ m(재활용품)

(뒤쪽)

			(뒤쐭							
작 성 요 령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급 자	○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공급 처	 원산지확인서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성명,전화 및 팩스 번호,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연 번	o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품명 · 규격	o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5	적용대상 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6	품목번호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	기재방법 - WO - CC - CTH - CTSH - BD - BU - MC - NC - CTSH - SD - SP - OP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9	원산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 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08.07.01(작성일) - 2009.06.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	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업체별 원산지인 증수출 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1에는 현단에만이 분에 만이 (단							o)	น ชา	'		20일
	상 호							사업	자 번호			
1. 신	주 소		대표자 성명									
 청 자	전 화 번 호	Ź						팩 스	: 번호			
^f	이메일 주소	-					인증번호 ※ 세관에서				너 기재	
	주요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예									□아니오		
	주요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원산지증명시스템 보유 □예 [□아니오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예 [□아니오		
지										□아니오		
' 정	최근 2년간	법제	13조/	세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	실 여	부		1	□아니오
	최근 5년간	영 제	13조/	제1항제2호이] [마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_ a	1	□아니오
<u>\$</u>	최근 2년간	- 2년간 「관세법」 등 처벌사실 여부 □예 □							□아니오			
건	최근 2년간	원산기	지증명	서의 속임수	<u> </u>	E는 부정발	급 사실	여부		<u></u> 여]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여부		[] 여]	□아니오
	※단순 전신	<u> </u> 오류여	게 의학	<u>한 반려 등은</u>								
						L 수출(생 수 	-					
연번	품명	품명 품목번호 (HS6단위) 적용대상협정		상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ç	원산지			
				4.	원	산지관리전	<u></u> 단자					
연번	연번 성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	전화 팩스		전자주소			서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이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관 세 청 장 이 이 세 관 장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수수료
구 비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제품										없 음	
서	3. 원천시도경시에 기재된 대통을 입통을 수 있는 지규 (회사도개석자, 제품 생산설명서 등)										W P	
류	4. 원산지증명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한 경우 전산처리시 스템 설명서 및 현황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 m(재활용품]

		작 성 방 법						
번 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신 청 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페스 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지정요건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3	지정요건 주요수출 (생산)물품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생산)물품의 품'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합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역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이래의 표원 원산지 기준 가. 완전생산 물품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대.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입적법을 적용한경우 - 현위기법을 적용한경우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내년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총족한 경우 바. 주요공정기준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안 등					
4	원산지 관리전담자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선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및 팩스번호, 전자주소, 서명을 적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작성)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l 성명 ,직위 ,소속부서 <i>전</i> 화					

인증번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상 호:
- 0 주 소:
- 대 표 자:
- 인증유효기간:

위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O O 세 관 장

※ 참고사항

-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120g/ m]

	품목별	별 운	실산기	이중수	출	자 인증	증 (연	장)	신청서)		처리기간
	상 호		· 	. – •		. –	_ , _		 자 번호	-		20일
1. 신	<u></u> 주 소								<u>기 년포</u> 자 성명			
청	전 화 번 호	<u> </u>							<u></u> 느 번 호			
자	이메일 주소	2						인취	증번호	※ 세	관에	서 기재
	업체별 원신	·기인	증수출	자 여부			'			□예]아니오
2.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리 원산지 <i>기</i>]준	을 충족하	는지 여-	부		□ 예]아니오
지 정	원산지증명/	서 작	성대장	비치 및 관	리	여부				□예]아니오
~8 요	원산지관리	전담지	다 지정	및 운영 🌣	부					□예]아니오
건	최근 2년간	법ス	∥13조제	세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시	실 여	부	□예]아니오
	최근 5년간	영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 🗍 아니오									
				3. 원석	산지	기인증대상	신청물	포				
연번	품명		품목번	호 (HS 6단	위)	적용대	상협정 원산		산지 결정기준		7	년산지 -
				4.	원	산지관리점	선담자					
연번	성명	즥	위	소속부서		전화	팩:	스	전자주소			서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ν1 =1 <i>α</i>	s)		년	월 (기교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기 원											
	인 M ·			귀 하								
구	1. 원산지	 인증	신청-	품목별 원ረ	ー シス	 기소명서 1	부					수수료
비 서				산자와 수출			,		-3.3.5			없 음
유	3. 원산지 생산설'			재된 내용-	을	입증할 수	있는 시	네류 (3	회사소개최	백자, 조	품	

210mm×297mm[보존용지 70g/m/ 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뉘쐭					
번 호	기제항목	기 제 내 용						
1	신 청 자	○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대표자 성명,전화 및 팩스 번호,이메일주소 를 적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지정요건	ㅇ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3	지정요건 원산지인증 대상신청물품	○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여 원산지기준 가. 완전생산 물품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3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입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바. 주요공정기준	기재방법 - WO - CC - CTH - CTSH - BD - BU - MC - NC - CTSH - BD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 ※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에						
4	원산지 관리전담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스 및 팩스번호, 전자주소, 서명을 적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작성)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별						

인증번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증유효기간:

원산지인증 물품 내역

적용대상협정	품명	품목번호 (HS 6단위)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위와 같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2의제6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 O 세 관 장

직인

※ 참고사항

-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인증수출물품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120g/ m]

[별표 8]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7	- 분	지 정 요 건
기본 요건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합격 기준	1.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 2.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기본 교육	 FTA 협정 및 법령 (4시간 이상) 품목분류 실무 (4시간 이상) 수출입 통관실무 (4시간 이상) 원산지 결정기준 (4시간 이상)
자격 시험 운영	시험 과목 (문항)	1. FTA 협정 및 법령 (25문항) 2. 품목분류 실무 (25문항) 3. 수출입 통관실무 (25문항) 4. 원산지 결정기준 (25문항)
	출제 위원	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FTA, 국제통상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원산지확인서

1.	-	상 호				사업자번호			
l l. 생	<u>.</u>	주 소				대표자 성명			
산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자	3	전자주소			원(산지인 증수출 자 인	<u> </u> 증번호		
2.		상 호				사업자번호			
 수	3	주 소				대표자 성명			
출		전화번호				팩스번호			
자	;	전자주소			원(산지인 증수출 자 인	<u>l</u> 증번호		
			원	산 지 확 역	인 [대 상 물 품			
3. 연	년번	4. 품명 규격	5. HS 번호 (6단위)	6.원산지? 기준		7. 적용대상협정	8. 원신 충족	·기준 F여부	9. 원산지
							예□ 아	니오□	
							예□ 아	- 오□	
							예□ 아	⊣오 □	
							예□ 아	⊣오 □	
							예□ 아	⊣오 □	
위 기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확인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작성·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서명) 직 위 : 회사명 및 주소 : 작 성 일 자 :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 공통 요령

- 원산지확인서는 국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1. 생산자		·생산자의 상호, 주소 등 기재 - 생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등
2. 수출자		·수출자의 상호, 주소 등 기재 -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등
3. 연번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4. 품명·규격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계약번호 기재
*. 查 6 · 川行	·계약번호를 모를 경우	·세금계산서 번호, 주문서 번호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번호		· HS 6단위 기재
6.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의한 원산지물품	·각 협정별 품목별원산지 결정기준 및 FTA특례법 시행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 6서식 등 각 협정에 정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
7. 적용대상협정		· 적용대상 협정을 기재
8. 원산지 기준충족 여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 기재 (6번 항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예☑"에 표시)
9. 원산지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기재

[별지 제27호 서식]

원십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 30일							
신	① 명칭(상호)							
청	② 대표자의 성명							
인	③ 주 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 제2-4-7조제2항 및 제2-4-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일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구비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별표 8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8호 서식]

제호 원산지관리/	사 자격시험 시청	행기관 지	정서
① 시행기관의 명칭			
② 시행기관의 소재지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사 위와 같이 원산지관리/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별지 제29호 서식]

				보	완	9	_	7	서		
) =1	상	호									
신청 업체	대3	표자									
	주	소									
보	완 フ] {	<u>}</u>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일간)
보완을	을 요하는	를 사	o IT								
보 5	완 할	사 형	-								

귀하의 년 월 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건에 위와 같이 보완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 이 보완요구에 대한 문의는 00세관 00 과 담당자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30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확약서									
	상	ই								
지원이	주	소								
신청인	사업/	자번호								
	대표기	자성명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시행규칙 제 조제 활 또는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서류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또는 서명)

세관장 귀하

※ 동 확인서 제출 시 FTA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 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원산지 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보고일기	다:
① 검증개요						
검 증 구 분	□ 서면검증 □ 현장검증 □ 서면검증 + 현장검증					
검 증 장 소						
서면검증기간			현장	검증기간		
② 검증대상업	체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설 립 일 자			업	종		
담당자 성명			전	화		
Fax			E	E-Mail		
업체주소	본사 주소 기재					
日川十二	공장 소재지 기재					
주요 수출물품	HS 6단위 기준으로 기재					
③ 검증대상물	-품					
관련 협정	□한 칠레 □한 싱가폴 □한 EFTA □한 아세안 □한 인도 □한 EU □한 미 □기타					
품 명	HS 코드	원산지 결정기준		수출	국	비고
	6단위 기재					
수축시 고버 ㅎ	수출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수출신고번호					
1 2 0 2 0 2						
④ 검증결과	I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물품 괴	<i>불충</i>	<i>족 물품 상,</i>	세 기재	

④ 검증 세부내역 및 적발사항				
검증 항목별 상세 기재				
⑤ 조치사항				
업체를 평가한 사항 및 시사점 구체적으로 기재				
⑥ 업체 의견				
업체에서 강평회 실시한 내역 및 건의사항 기재				

【관세청 지침】

사전검증 대상기업의 원산지 인증심사특례 적용을 위한 의견서					
I. 사전검증 대상업체					
ই	l 사 명		사업자번호		
대	상물품(HS)				
검	검 증 기 간 검 증 방 법		서면□ 현장□ 부품공급업체□		
Π.	주요 내용(~	검증 결과 란에 ■	丑刈)		
	주요 확인 항목			검증결과	참고
1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가?			Y□ N□	
2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을 작성·관리하는가?			Y□ N□	
3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별로 HS코드와 원산지를 분류하고 있는가?			Y□ N□	
4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별로 취득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Y□ N□	
5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가?			Y□ N□	
6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하고 서명카드도 비치 · 운영하는가?			Y□ N□	
7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 하는가?			Y□ N□	
8	원산지 증빙자료(소명서 등)를 보관하고 있는 가?		Y□ N□		
9	각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충족 하는가?(충족시 ■ 표시)				
	한·칠레□ 한·싱□ 한·아세안□ 한·EFTA□ 한·인도□				
Ⅲ. 종합평가의견					
예) ①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인증심사 특례적용 대상기업임을 확인함 ② 일부 미비한 경우 : 미비한 사항의 행정지도를 통한 보완조치 내역 기재(별 첨 : 각서, 업무 계획서 징구 등)					
				작성자 OC) 세관 OOO 팀장

【관세청 지침】

인증번호: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 (假)인증서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증유효기간: (삭제)

원산지인증 물품 내역

적용대상협정	품명	품목번호 (HS 6단위)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위와 같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2의제6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O O 세 관 장



※ 참고사항

- 1.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는 협정발효 이후, 對EU 수출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 **동 인증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한-EU FTA 가(假)서명본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품목별인증수출자 지정심사를 완료하였다는 인증서입니다.
- 3. 한-EU FTA 국내비준일 이후, 동 인증서를 첨부하여 가 (假인증신청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품목별 인증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인증심사 없이 곧바로 정식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